

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7의2] <신설 2023. 10. 19.>
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(제3조제9항 관련)

분류	품목
재사용전지	1) 재사용전지모듈 2) 재사용전지시스템(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)

비고

-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.
 - 별표 4 제1호타목2)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
 -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
- 제1호에 따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.
-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.